

구미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96 . . .

제 출 사 : 구 미 시 장

1. 의결주문

-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축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산폐수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저감시키기 위해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 관리 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한 자연생활환경 및 수질을 제공 함과
- 축산농가(허가, 신고대상 축산농가)에 대하여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산폐수 처리에 편의를 도모코자 등 조례를 제정 함.

3. 주요골자

-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관리운영 : 시장이 직접운영 하며 필요시 시설 일부 및 임대 가능
-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 수거대상지역 - 구미시 전지역
 - 수 거 대 상 - 신고대상 미만의 축산농가를 원칙으로 하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도 위탁 처리 가능
- 수집·운반대행 - 기존 분뇨관련 수집·운반영업자 또는 일반인 및 법인단체
-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구미시축산공동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사업장”이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과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4. “축산분뇨저장조”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직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할 경우 임대료 산정은 지방 재정법 및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또는 경영수지 분석을 토대로 한 직접 금액으로 한다.

제4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 축산폐수 수거 대상지역은 구미시 전역으로 한다.

- ②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마만의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의 축산폐수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또는 방지사설 수리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축산분뇨 저장조 설치 권장) ① 시장은 축산폐수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시설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분뇨 저장조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를 수집·운반에 용이 하도록 설치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8호의 축산분뇨 권장저장조를 설치하는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집·운반) ① 시장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축산농가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 수집·운반을 대행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제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축산폐수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거 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⑤ 대행업자 선정, 대행기간, 계약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대행업자의 자격 요건)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대행업을 신청 및 계약하고자 하는자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구미시내에서 분뇨관련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자 또는 일반인 및 법인 단체.

2.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확보 가능한자(단, 분뇨 관련 수집·운반업 허가 자는 제외)
3. 축산폐수 휴입시 차량 2대(총 용량 9킬로리터) 이상 확보 가능한자(단, 분뇨관련수집운반업 허가 자는 현재 보유 차량으로 가능)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업의 대행 신청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지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예관한법률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정역 이상의 형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인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취소된 자로서 계약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축산 폐수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기타 시장이 처리 시설을 이용도록 인정한 자

제12조 (처리비 징수 교부금 지급)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 금액의 10/100범위 안에서 징수 교부금을 분기말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수수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폐수량에 대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인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의 정수에 관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지도·감독)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처리 능력 향상과 축산 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 운반의 적정심 여부
3. 기타 수집, 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 (포탈된 처리시설 처리비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시설의 처리비가 발견 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10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 위	계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비
1t 당	6 원 5 원	1 원